

定 款

사단법인 국가디자인연구소

사단법인 국가디자인연구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선진부국 창출을 위한 '명품' 국가 및 지방 미래발전 설계 관련 학술연구와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 및 지방의 전반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가디자인연구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907호(내수동)에 둔다. 단,사업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정치 발전 방안의 모색
2. 한반도통일을 위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방안 연구
3.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위한 한중일 등 역내국가 (Regional Area)협력 방안 연구
4. 경제개발 발전 모델 연구(새마을 운동 모델 재구성)
5. 중소기업 발전 모델 연구 및 포맷지원
6. 국가 자원 및 에너지 전략 수립 관리 방안
7. 아시아적 가치(불교 유교 등) 공유(Shared Value) 연구
8. 법치국가 실현방안 연구
9.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 및 활동
10. 아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11. 지방도시 선진화 발전모델 연구 및 구축
12.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회원은 일반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이 법인의 일반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일반회원이 3회이상 회비를 체납하면 준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2. 감사 1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총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꺾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등)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소(원)장을 둔다. 연구소(원)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실무를 통할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연구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3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의2 (의사록의 인증) 총회의사록의 인증 시 대표자가 참석회원의 의사록 인증에 관한 위임을 받을 시 총회의사록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산하 연구소 운영 및 책임자 임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제출은

출석으로 본다.

②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①이사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연구소(원)

제28조(연구소(원)의 설립) ①이 법인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소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소장 및 연구원장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소(원)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소(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단,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입할 수 있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

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부서)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위 정관은 당사에 비치된 정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14년 05월 08일

사단법인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 허성우